

소규모 합병 공고

(주)프로텍은 상법 제 527 조의 3 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 승인으로 (주)피에스와 소규모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합병 방법 : (주)프로텍이 (주)피에스를 흡수합병함.
2. 합병 비율 : (주)프로텍 : (주)피에스 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 - 1) 상호 : (주)피에스 (본사 소재지 :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(산학협동관 304 호))
4. 합병 기일 : 2018 년 4 월 17 일
5. (주)프로텍과 (주)피에스와의 합병은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.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- 1) 행사절차 : 2018 년 2 월 27 일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 - 2) 제출기간 : 2018 년 2 월 28 일 ~ 2018 년 3 월 14 일
 - 3) 행사방법 및 장소
 - 가) 명부주주 : 2018 년 3 월 14 일까지 (주)프로텍 경영관리팀에 제출(☎ 031-470-0700)
 - 나) 실질주주 : 2018 년 3 월 11 일까지(※ 명부주주보다 3 일전) 거래증권회사에 제출
 - 4)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 - 5)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승인을 얻어야 함.

2018 년 2 월 28 일
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 번길 11-14
주식회사 프로텍 대표이사 최승환

별첨)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

(주)프로텍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(주)프로텍과 (주)피에스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		주주명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수	

2018 년 월 일

성명 : 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